

서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중 “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으로 한다.” 를 “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으로 한다.” 로 한다.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u>제5조(이용자의 범위)</u> <u>복지관의 이용대상은</u> <u>저소득층으로 하고</u> <u>생활보호 대상자를</u> <u>우선으로 한다.</u></p>	<p><u>제5조(사업의 대상)</u> <u>복지관 사업의 대상은</u>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u> <u>하는 자를 우선으로</u> <u>하되 사회복지서비스</u> <u>욕구를 가지고 있는</u> <u>모든 지역사회주민으</u> <u>로 한다.</u> <u>1~4.(생략)</u></p>	<p><u>제5조(사업의 대상)</u> <u>복지관 사업의 대상은</u> <u>사회복지서비스를 받</u> <u>고자 하는 모든 지역</u> <u>사회주민으로 하되</u>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u> <u>하는 자를 우선으로</u> <u>한다.</u> <u>1~4.(개정안과 같음)</u></p>

의안번호	제 106 호
의결년월일	1999. . . (제 회)

서산시 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8. 18.

서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6
----------	-----

제출년월일: 1999. 8. 18

제 출 자: 서산시장

□ 개정이유

-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을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 민으로 확대하여 복지관 기능 활성화와 함께,
-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자로 하므로써 시민의 복지증 진에 기여코자 함.

□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관 사업의 대상을 모든 지역사회주민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자로 하도록 함(안 제5조).

□ 참고사항

- 서산시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 (99. 6. 23) 결과 - 완화 및 폐지

서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사업의 대상) 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으로 한다.

1.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층
2. 심신장애, 노인등 특수문제 주민
3. 직업, 부업, 훈련 및 알선의 필요성이 있는 주민
4. 유아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제5조(이용자의범위) 복지관의 이용 대상은 저소득층으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p>	<p>제5조(사업의 대상) 복지관 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 사회주민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층 2. 심신장애, 노인 등 특수문제 주민 3. 직업, 부업, 훈련 및 알선의 필요성이 있는 주민 4. 유아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생략)</p> <p>②제1항에 의하여 급수중지를 할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호”)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p> <p>④(생략)</p>	<p>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현행과 같음) (삭제)</p> <p>(삭제)</p> <p>④(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등) ①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삭제)
<p>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③(생략)</p> <p>④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p> <p>⑤(생략)</p>	<p>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③(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⑤(현행과 같음)</p>
<p>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p>	(삭제)
<p>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관한사항은 미리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p>	(삭제)